

· 작성부서	유가증권시장본부 주식시장부 코스닥시장본부 코스닥시장부		
· 담당자	주식제도팀장 : 김기경(☎ 3774-8590) 팀원 : 주건일(☎ 3774-8593) 코스닥매매제도팀장 : 조희정(☎ 3774-9610) 팀원 : 이찬호(☎ 3774-9615)		
· 배포일	2015. 11. 4 (수)	· 배포부서	홍보부(☎3774-4082~4085)

※ 이 자료는 배포 즉시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제도 및 거래안정화장치 도입 등

I 개요

- 한국거래소(이사장 최경수)는 '15.11.4일 금융위원회에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함에 따라 저유동성 종목에 대한 시장조성자 제도 및 주문실수 등에 따른 대규모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거래안정화장치를 도입할 예정
- 또한 변동성완화장치 등의 도입에 따라 기능이 중복되는 단기과열완화장치를 개선하고, 부정확성으로 인해 시장혼란을 야기할 수 있었던 차익거래 잔고 보고제도를 폐지할 예정

II 주요 내용

1 저유동성종목에 대한 시장조성자제도 및 단일가매매 도입

(1) 도입배경

- 현재 주식시장은 대부분의 유동성이 대형주에 집중되고, 중소형주는 거래가 부진한 상황*이나, 상장법인의 자발적인 노력으로는 유동성 제고에 한계**가 있으며 저유동성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 시가총액 상위10% 이내에 포함되는 종목들의 거래대금은 전체 시장대비 67% 차지하는데 반해 하위10%에 해당하는 종목들의 거래대금은 0.1%에 불과
- ** 현행 유동성공급자(LP)제도는 상장회사가 증권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유동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LP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관리종목에서 제외되고 있어 유동성 부족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수단으로서 보다는 관리종목 회피수단으로 이용되는 측면이 있음
- 이에 따라 저유동성 종목에 대해 시장조성자(Market Maker) 제도를 도입하고, 저유동성 종목 중 체결주기가 과도하게 긴 종목은 단일가 매매를 적용하여 유동성 집중을 통한 안정적 가격형성 유도

(2) 주요 제도 (관련 세칙 개정 예정)

< 시장조성자 제도 >

- (시장조성계약) 거래소와 회원사*간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하며, 1년 단위로 갱신
 - * 시장조성자는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결제회원을 대상으로 하되, 최근년도 시장조성실정 및 자기매매규모 등을 평가하여 일정수를 선정할 예정
- (대상종목) 연례 유동성 평가* 결과, 거래량 및 스프레드가 부진한 저유동성 종목 중에서 체결주기가 양호**한 종목
 - * 평가기간 : 직전 연도 10월초 ~ 당해 연도 9월말
 - ** 일평균거래량 5만주 미만, 스프레드 3tick 초과, 체결주기 10분 이내
- (의무 및 혜택) 시장조성자는 양방향 조성호가 유지 및 최소호가 유지 의무를 수행*하는 대신 증권거래세 및 수수료 면제, 실적에 따른 대가 지급 등의 혜택이 부여
 - * 시장조성 의무시간의 70%이상 호가 제출 의무, 종목별 3~10tick이내 스프레드 유지 의무, 종목별 100만원~600만원 최소호가유지 의무 등

< 저유동성 종목 단일가매매 체결 적용 >

□ (대상종목) 저유동성 종목* 중 체결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종목

* 일평균거래량 5만주 미만, 스프레드 3tick 초과

□ (체결주기) 호가집중을 통한 가격안정화, 유동성 개선효과 등을 고려하여 10분 단위로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로 체결

□ (평가시기) 연례평가가 원칙이나, 상장법인의 액면분할, LP계약 등을 통한 유동성 개선 노력이 있을 경우에는 분기 단위로 접속매매 전환

2 증권시장 거래안정화장치 도입

(1) 도입배경

□ 최근 가격제한폭 확대* 및 고빈도 매매의 증가**로 인해 착오주문 발생 시 큰 폭의 손실이 가능

* $\pm 15\%$ → $\pm 30\%$ 로 확대('15.6.15일)

** 주식시장 고빈도 매매 거래량 비중 : 4.7%('12년) → 8.7%('15년)

◦ 호가수량제한* 및 변동성완화장치**로 일부 주문실수를 예방할 수 있으나, 소량 주문이 반복적으로 제출되는 고빈도 매매의 경우 현행 제도만으로 예방하기 어려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 마련

* 1호가당 제출할 수 있는 수량을 상장주식수의 5%까지로 제한

** 직전 가격대비 체결가격이 급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즉시 체결하지 않고 단일가매매로 전환하여 가격급변의 이유가 호가불균형(Order Imbalance)이나 주문실수(Fat Finger Error)에 의한 것인지 정보반영을 위한 본질적 가격변동 등인지를 투자자로 하여금 판단할 기회를 부여하는 가격안정화장치

□ 또한 대규모 착오매매 발생 시 회원이 위탁자의 매매를 자기매매로 인수*할 뿐 다른 구제수단이 없어 구제제도 도입으로 결제리스크 축소 필요

* 현행 착오매매정정 제도는 회원이 위탁자의 주문을 호가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한 경우 회원의 자기매매로 인수하도록 함

(2) 주요 제도 (관련 세칙 개정 예정)

호가 일괄취소(Kill Switch) 및 착오매매 구제제도는 주식뿐만 아니라 ETF, ETN, ELW, 수익증권 등에 적용되는 제도임(채권, 신주인수권증권·증서 제외)

※ 파생상품시장의 경우 호가 일괄취소('14.3.3일) 및 착오매매 구제제도('14.9.1일)를 기 도입하여 시행중

< 호가 일괄취소(Kill Switch)제도 도입 >

- (개념) 착오주문 발생시 회원이 신청할 경우 해당 계좌의 미체결 호가를 일괄적으로 취소하여 손실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
- (신청방법) 증권사가 회원시스템 또는 비상단말기(도입예정) 등을 통해 알고리즘 계좌의 미체결 호가에 대한 일괄취소(Kill Switch)발동을 신청
- (처리 및 해제) 거래소는 해당 계좌의 모든 종목 미체결 호가를 일괄 취소 및 추가적인 호가접수를 차단하고, 회원은 발동 후 10분 경과 후부터 동 조치에 대한 해제 신청 가능

< 대규모 착오매매 구제제도 도입 >

- (개념) 시장가격과 상당히 괴리된 가격으로 성립된 착오매매를 회원이 신청할 경우 거래소 직권으로 구제하는 제도
- (구제 신청) 착오회원이 회원시스템이나 비상단말기 등을 통해 착오매매 발생 시점부터 30분 이내 신청하고, 거래소는 착오발생 익일 17시까지 구제여부 결정
- (구제 기준) 손실금액이 100억원 이상*(복수종목 포함)이면 신청이 가능하고, 이 중 착오 체결가격이 직전가격 대비 $\pm 10\%$ 를 초과하는 체결 분만 구제 가능

* 거래소는 호가 및 거래패턴 등을 감안하여 동일한 착오에 의해 체결된 거래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제 여부 결정

3 단기과열완화장치 개선 및 차익잔고 공표제도 폐지

(1) 도입배경

□ 현행 단기과열완화장치*는 유사한 기능을 가진 시장안정화장치(VI 등)와의 기능 중복 등으로 거래불편 및 가격형성 과도하게 제한

* 주가, 회전율, 변동성 등 단기과열지표에 따라 적출되거나 시장감시위원회가 투자경고 및 위험종목으로 거래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1일 정지, 3일간 단일가매매(30분 단위) 실시

□ 현행 차익잔고 공표제도는 실제 거래자(기관 및 외국인)와 보고자(증권사)의 불일치 및 투자자의 잔고내역 공개 기피 등의 이유로 정확한 잔고 집계 및 공시에 한계

(2) 주요 제도

< 단기과열완화장치 개선 >

□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시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폐지하고, 단기과열종목 지정제도와 시장경보제도를 분리하여 투자경고·위험종목으로 지정 시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하지 않고, 1일 매매거래정지 조치만 적용

< 차익거래 잔고 보고 및 공표 폐지 >

□ 일별로 차익거래 현황이 공표되고 있으며, 최종거래일에는 사전신고제를 통해 차익거래 흐름이 충분히 파악 가능하고,

- 회원사의 집계의 어려움 및 부정확성을 고려하여 현행 차익거래 잔고 보고 및 공표제도를 폐지

Ⅲ

시행시기

- 거래소는 향후 관련 세칙을 개정하여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시행 시기를 확정할 예정
- 다만, 각 제도개선 사안별로 전산개발 일정 및 업계의 준비상황 등을 감안하여 시행시기를 단계적으로 정할 예정

【각 제도별 예상 시행시기】

내 용	예상 시행시기
지수차익거래 잔고 보고제도 폐지	‘15. 11. 23일
단기과열완화장치 개선	‘15. 12. 14일
시장조성자제도	‘16. 1. 4일
저유동성종목 정규시장 단일가매매	‘16. 6월 중
증권시장 거래안정화장치	‘16. 6월 중

※ 한국거래소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krx.co.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